KiRi 리 포 트
글로벌 이슈

미국 NAIC, 반려동물보험 모델법 제정

손민숙 연구원

요 약

최근 반려동물의 가족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 및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보험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표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반려동물보험 모델법(Pet Insurance Model Act)을 제정하였음. 모델법의 시행이 진료 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향후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민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1], 미국 내에서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및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

- 미국반려동물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70%에 이르는 1억 5,11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의료비 지출도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북미반려동물건강보험협회(The 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NAPHIA)는 2021년 말 북미지역 내 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 수는 441만 마리이며, 관련 시장은 전년 대비 27.7% 성장하였다고 보고함[3]
- 일반적으로 미국의 반려동물보험은 사고전용보험, 사고 및 질병보험, 건강보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는 반려인들의 대부분이 보장 범위가 넓은 종합보험을 선호함[4]
  - 반려동물보험은 인간의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다양한 수준의 보장 범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책사항 및 공제액, 보험금 지급 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보험가입자의 98%가 사고 및 질병보험(Accident & Illness plan) 또는 임베디드 건강보험(Embedded Wellness plan)에 가입하고 있어 종합보험의 가입률이 높으며, 사고전용보험의 가입률은 2%임

○ 반려동물보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보험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표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증가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는 2022년 8월, 반려동물보험 모델법(Pet Insurance Model Act)을 제정하였음[5]

1) 양승현(2021. 8. 23),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 『보험법 리뷰』, 보험연구원
2) APPA(2021. 6. 22), "2021-2022 APPA National Pet Owners Survey"
3) NAPHIA(2022. 5),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4) NAIC(2022. 8. 17 업데이트), Pet insurance(https://content.naic.org/cipr-topics/pet-insurance)

- 기존에 반려동물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고,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많아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한 반려인들의 불만이 높았음
- 이와 같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보험당국(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CDI)은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9월, 미국 내 최초로 반려동물보험 관리법(AB 2056)을 마련하였음
  - 캘리포니아 반려동물보험법은 보장내역, 기저질환 제한 여부 및 공동보험, 대기기간, 공제, 보험료 등 보장 범위의 한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였음
  - 특히, 30일 이상의 보험청약철회기간(free look)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기간 내 청약 철회 시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최근에는 보장 범위를 확장하여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음
- NAIC의 모델법은 캘리포니아의 반려동물보험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1일 수의사, 소비자 대표 및 보험회사 등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에 의해 반려동물보험모델법 초안이 제안되었음
  - NAIC는 법 제정 이전에도 반려동물보험 감독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관련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6)]

○ **NAIC의 모델법은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비자 보호, 기저질환 제한에 관한 사항, 웰빙프로그램과의 구분, 보험회사의 의무 교육 요건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소비자 보호) 보험회사는 기저질환 또는 선천성 질환, 만성질환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그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 대기기간과 가입기간, 공제 및 공동보험 등 보장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사항에 대해 공개할 것이 요구되며, 보험금 지급 일정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정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도 별도의 문서로 공개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공시된 정보와 옵션들을 검토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음
- (기저질환 제한) 보험회사는 기저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방법이 제한적이며, 보험금 지급 제한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 (웰빙프로그램과의 구분) 타인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거나 우발적 사고에 대한 일정 금액의 보험금 지급 또는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계약에 해당하고, 반려동물의 건강, 안전 또는 웰빙 증진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빙 프로그램과는 구분됨을 명시함
  - 보험회사는 반려동물보험으로 웰빙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없으며, 반려동물보험의 판매 또는 권유 시 웰빙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됨
- (보험회사 의무 교육 요건) 보험판매업자는 의무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반려동물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는 보험판매업자의 의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반려동물의 수명 연장과 치료 비용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동물보험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모델법의 시행이 진료 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향후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5) NAIC(2022. 8. 13), "NAIC Passes Pet Insurance Model Act"
6) 김세중·김유미(2019. 11. 25), 「미국 반려동물보험 감독 가이드라인 도입과 시사점」,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